

부산고등법원 2021. 11. 3 선고 2021나533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초석

담당변호사 이정훈, 장권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상률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

변 론 종 결 2021. 9. 2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3. 31. 선고 2020가합4241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C과 피고 사이에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특허권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26. 체결된

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위 특허권 중 1/2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8. 6. 26. 접수

D로 마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채권자취소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위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이 사건 청구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등록절차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문관, 판사 박운삼, 판사 임상민

특허권의 표시

- 특허등록번호: N

분류기호: A23L 5/00, A47J 27/16, A23L 21/10

발명의 명칭: O

출원연월일: P

공고연월일: Q

특허결정(심결)연월일: 2017년 11월 2일

출원번호: R

존속기간(예정)만료일: 2037년 4월 3일. 끝.

